

1

자금지원 방안

1 긴급경영안정자금(일시적경영애로) 지원

- (용자규모) 250억원
- (지원내용)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CV)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
- (지원대상)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CV) 관련 피해 중소기업

■ 지원대상

- ① 신종CV 확산으로 인한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중소기업
- ② 對중국 수출·수입비중이 20%이상인 기업 중 신종CV 관련 수출·수입 피해 중소기업
- ③ 신종CV 감염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·공연·운송 업종*영위 중소기업

* (관광)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행업, 호텔업, 관광객이용시설업, 국제회의업, 유원시설업, 관광편의시설업,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의 청소년수련시설

(공연) 공연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공연장

(운송) 물류산업(별표 9),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전세버스운송사업, 운송관련 서비스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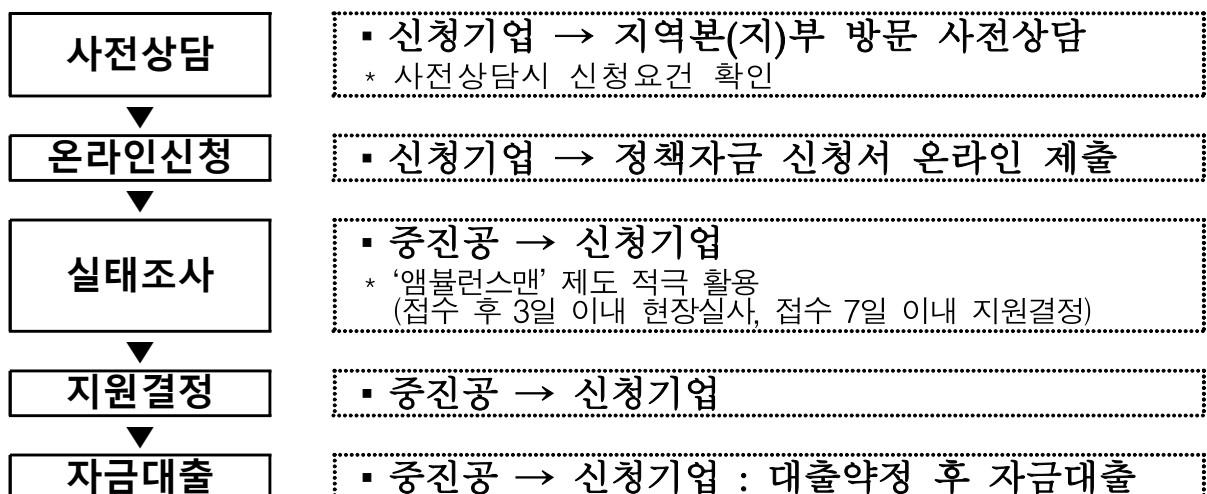
■ 요건 : 매출액 10%이상 감소 기업

* (비교시점) 신청전월과 전전월, 신청전월과 전년동월,
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,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,

※ 중국 내 물류 운송이 중단된 후베이성 봉쇄령(20.1.23) 이후부터 피해 기산

- (대출한도)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(3년간 10억원 이내)
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1/4분기 2.15%, 변동금리)
- (대출기간)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- (우대사항) 융자제한사유 중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지원기업 적용 예외
- (접수기간)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2.13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접수

- (상담예약)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하여 지역본(지)부별 온라인 신청 예약 시스템에 '코로나 피해기업 상담방'을 별도 개설
 - * 기업금융처 개설 → 지역본(지)부 물량 입력(상황에 따라 추가오픈, 그룹상담 실시)
 - * 무예약 상담된 건은 상담 후 사후 온라인신청 예약 안내(상담예약 대행 가능)
 - * 상담 희망기업이 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상담예약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
- (상담 및 신청)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접수
 - * 긴급지원 취지를 감안하여 상담 후 신청 대기기간 최소화
 - * 온라인신청 시 '긴급경영안정자금(일시적경영애로) 융자신청서' 활용
- (전산 입력)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별도 세부사업코드 부여
 - * 자금코드(FAEKYCK) : 긴급경안자금(코로나피해)
 - * 신청사유 : '주거래처 생산지연', '중국수출입피해', '피해업종 영위기업'으로 신청 사유 구분 입력
- (기업평가 및 지원결정) 앰블런스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청·접수 후 7일 이내 단축 지원
 - 지역본(지)부 앰블런스맨 수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경영지원처 앰블런스맨 지원 요청 또는 지역본(지)부 일반직원 투입
 - * 평가기업 사업장에 코로나 감염자(자가격리자 포함)가 발생한 경우, 사업장 이외 장소에서 면담 또는 원격심사(유무선 통신기 이용)
 - 긴급한 자금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코로나 피해기업은 기업진단 생략
- (지원절차)



※ 직원 안전과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상담 및 실태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행동수칙에 유의

- (융자방식)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 선정 후 직접대출
- (융자예산) 지역본(지)부 별 배정 예산(긴급경안)을 우선 활용 후 부족 시 본부 유보예산(200억원) 활용
 - * 본부 유보예산을 활용하는 경우 기업금융처와 사전 협의
- (적극행정 면책) 코로나 피해기업 신속 지원을 위한 직원부담 완화

피해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신속한 지원 및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대출 취급 후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기금에 손실을 끼친 경우라도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 취급자(심사자 포함)의 고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

* 관련 문서: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-35(2020.02.12.)

2 정책자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실시

- (만기연장) 對중국 수출입 감소기업(지원대상②) 및 피해 지원업종 영위기업(지원대상③)에 대하여 1년 만기연장
 - 최소상환요건(원금 25%이상) 미적용 및 가산금리 감면(0.5→0%p) 우대
- (상환유예) 거래처 생산지연 피해 제조기업(지원대상①)에 대하여 3개월 원금상환유예 최대 3회까지 지원
 - 최소상환요건(원금 10%이상) 미적용 및 유예기간 연장(6→9개월) 우대
- (신청기간) 2.13부터 상반기(~6.30) 중 신청 접수
 - ※ 이자는 매달 정상상환, '대리대출'의 경우 대출취급은행 본·지점 협의 후 추진
 - ※ 연체 중인 기업은 연체원리금 상환 이후 특별만기연장, 특별상환유예 신청 가능

2 지원요건 확인방법

- (매출감소 확인) 매출액 감소 확인은 '매출원장, 세금계산서합계표' 등 매출 증빙서류로 확인
 - 비교 시점: '신청 전월과 신청 전전월', '신청 전월과 전년도 신청 전월', '신청 전분기와 신청 전전분기', '신청 전분기와 전년도 신청 전분기' 매출비교

* (예시) '20년 4월 신청기업은 '20년 3월과 '20년 2월 매출액, '20년 3월과 '19년 3월 매출액, '20년 1분기와 '19년 4분기 매출액 또는 '20년 1분기와 '19년 1분기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 10% 감소 확인

* (참고) '20년 1분기 중 신청 기업은 분기 비교 불가(피해 기산 시점에 따라 적용 불가)

※ 증빙서류는 중국 내 물류 운송이 중단되어 피해가 확산된 1월 자료부터 적용

○ (주거래처 생산지연 확인) 직전 사업연도('19년) 또는 최근 1년 간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에 따른 피해를 확인

- 주요 거래처: 매출(입)액의 30%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또는 매출(입)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

* (방법) 매출원장, 매입원장, 세금계산서합계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·매입 증빙서류로 확인

- 생산지연: 거래처로부터의 거래중단·지연 공문, ERP 상 납품계획 대비 실제 납품 지연, 납품 계획 공문 대비 실제 거래 지연 내역 등을 확인하여 판단

○ (수출입 비중 확인) 직전 사업연도('19년) 또는 최근 1년 간 對 중국 수출 비중 또는 수입 비중을 계산하여 20% 이상 여부 확인

* (증빙서류)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수출입실적증명, 수출신고 필증, 수입신고필증 등

* 중국 수출비중과 중국 수입비중 합산 불가

$$\text{산식} = (\text{중국 수출금액} / \text{총 수출금액}) * 100 \geq 20\% \text{ 또는} \\ (\text{중국 수입금액} / \text{총 수입금액}) * 100 \geq 20\%$$

○ (피해업종 확인) 신종 CV 피해 지원대상 업종은 '첨부' 참조

- '운송관련 서비스업'은 아래 사업 영위기업 중 선박·선사와의 해당 거래가 전체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적용

* 선박연료공급업: 선박용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(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)
선용품공급업: 선박(건조 중인 선박 및 해양구조물 등을 포함한다)에 음료, 식품, 소모품, 밧줄,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, 집기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선용품을 공급하는 사업(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)

* 업종판단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요령 제7조 적용